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6, VOL. 29, No. 2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6.29.2.083

한의약지식재산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및 국내현황 조사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소고

[1]이주호, [2]김남일, [3]김동율, [2]김민선, [1]김연희, [4]차웅석, [5]안상우
[1]특허법인강인, [2]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3]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4]경희대학교 청강한의학역사문화연구센터, [5]한국한의학연구원

The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Treaties and Domestic Situations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Korean Medicine and Our Countermeasures

[1]Ju-Ho Lee, [2]Namil Kim, [3]Dong-Ryul Kim, [2]Min-Seon Kim, [1]Youn-Hee Kim, [4]Wung-Seok Cha, [5]Sang-Woo Ahn
[1]*KangIn IP & Law*
[2]*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3]*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4]*CheongKang Center for History and Culture of Korean Medicine,* [5]*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and its biological resources, including Korean Medicine, has regarded as an important o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discussed and implemented various treaties on how to exercise and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traditional medicines. In Korea, the governmental policies and the academic societies have endeavored to establish the protection method and academic foundations of Korean Medicine's intellectual properties.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discussions in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Korean governmental polici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medical intellectual properties. Furthermore, this paper will contemplate the possible arguments and countermeasures to protect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Korean Medicine.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ind the reasonable and effective ways of protection of Korean Medicin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ey words : Intellectual property, Korean Medicine, Nagoya protocol, Traditional Knowledge, WIPO

Ⅰ. 서론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이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의 사회이다. 지식재산이 정보화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이미 전 시대의 과학기술에 기반한 하드웨어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롭게 파생되는 정보와 지식은 물론, 역사적인 연속성을 띠고 문화적·사회적인 정체성을 가진 전통지식도 포함된다. 특히 최근에는 역사 속에서 인류가 꾸준히 축적해온 지혜와 연결된 것들이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수의 사례들이 존재하며, 그 가치는 1,000조원 이상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를 열어서 각국의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하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접수▸2016년 11월 18일 수정▸2016년 11월 30일 채택▸2016년 11월 30일
교신저자▸ 안상우,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 042-868-9442 E-mail : answer@kiom.re.kr

1) 특허청.『지식재산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대전:특허청, 서울: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274.

이 정부간위원회는 2001년 4월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로 2016년 9월 현재 제31차 회의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WIPO 가입국 간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입장차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전통지식 보유국은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성을 띠는 국제적 협약과 이에 따른 국내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전통지식 이용국은 전통지식을 기존의 지식재산권 내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WIPO 정부간위원회는 2016년 10월 기준으로 31차까지 논의를 지속하여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려 노력하고 있으나 의견 합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한의약 전통지식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성과물로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를 들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10월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으로 발효되었지만,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에 대한 타협점이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한의약은 전통지식 산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며, 특히 최근에 와서 현대 서양의학의 여러 가지 한계점에 대한 인식과 자연적, 전인적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더불어 한약이나 전통지식 유래의 천연식물에 대한 지식재산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의약은 기존 사적 소유물로서의 서구적 지식재산체계 개념에 맞지 않으며,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특정 부족, 공동체 또는 국가 전체에 전해져 내려오고 공유되는 지식으로 그것을 권리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0년대 초반 이상정 등의 「전통의약 분야의 법적·제도적 보장방안 연구」[2]와 안상우 등의 「우리 전통의약학 자료의 보호방안」[3]이 있다. 이 두 편의 연구는 한의약의 지식재산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한 초창기의 연구로서 대응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논의한 것이며, 안상우 등의 논문은 주로 전통의약학 관련 자료의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이후 고광국의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4], 김은진의 「한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방안」[5], 고광국의 「나고야의정서가 전통지식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책」[6], 조재신 등의 「전통지식·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및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한 보호전략」[7] 등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연구보고서로서는 2002년에 특허청과 서울대학교에서 조사한 『전통의약관련 전통지식현황조사 및 지재권 관련연구』[8]와 같은 해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한 『전통의약기술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연구』[9]가 있다. 전통의약지식의 지적재산권 관련한 주무기관인 특허청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전통의약지식기반구축을 위한 연구와 용역을 진행하였다.[10]

이상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아직 용어와 범주 및 대상마저도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점차 국제사회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야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궁극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전통지식의 재산권에 대한 기준은 세워질 것이고, 이에 대한 국내의 대응과 고민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2001년 WIPO의 정부간위원회 논의 시작과 더불어 주무부서인 특허청에서 국내 전통지식보호에 대해서 나름의 전략수립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03년 2월 개최된 제7차 PCT 국제조사기관회의(Meeting of International Authorities, MIA) 에서는 전통지식 문헌을 PCT 최소문헌(PCT Minimum Documentation)의 비특허문헌(Non-Patent

2) 이상정, 조상혁, 안효질. 「전통의약 분야의 법적·제도적 보장방안 연구」. 경희법학. 2001;36(2):107-156.
3) 안상우, 최환수, 김홍준. 「우리 전통의약학 자료의 보호방안-WIPO의 전통지식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의 대응방안 모색-」.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41-54.
4) 고광국.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전통의약지식의 현황, 국제논의 및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1-234.
5) 김은진. 「한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방안-전통지식의 세계적 논의와 특허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1-92.
6) 고광국. 「나고야의정서가 전통지식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책 : 한의약에 관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2013;19(1):305-352.
7) 조재신, 김병남. 「전통지식·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및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한 보호 전략」. 법학논총. 2015;35(3):371-406.
8) 특허청. 『전통의약관련 전통지식현황조사 및 지재권 관련연구』. 대전:특허청. 2002:1-482.
9) 한국한의학연구원. 『전통의약기술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연구』.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2:1-252.
10) 한국한의학연구원. 『전통적 임상기술의 보호 및 DB구축 1』.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4:1-168. 한국한의학연구원. 『전통지식 DB 구축사업 1차년도 산출물(전통지식 논문 국영문DB)』.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5:1-422.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6.29.2.083

Literature)에 포함하는 것에 합의하고 그 선정기준까지 제시하였고, 이러한 국제적 보호 흐름에 발맞추어, 2004년도에 전통지식 DB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동안 한의학 분야에 대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DB를 구축하였으며, 2007년 12월에 전통지식 DB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1] 그러나 가장 최근의 연구보고서인 2015년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중의 지식재산보호 및 육성체계구축의 연구보고서인 『전통지식 보호 국제체제변화와 한의약지식 보호육성 대응전략연구』[12]에서도 제시하였다시피,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고사하고 전통지식 보호의 목적과 방법,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인 상태이며, 세부 산업별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조차도 미미한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와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합의가 어디 수준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보호방안에 대해서 점검하는 한편,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방안 중 한의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전통지식, 특히 한의약 전통지식을 국제적 논의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국내 한의약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바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기구의 논의

한의약 즉 한국의 전통의약지식과 관련된 키워드는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GR)[13] 및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이다. 동아시아 지역기반의 전통적 자생본초를 바탕으로 하고 그에 대한 역사적 공동체적 집적 지식을 활용하는 한의약은 그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활용에 있어서 상당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한의약을 포함하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권리를 어떻게 보호 혹은 이익을 공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토착세계의 전통지식이 원래의 지역을 벗어나 서구를 비롯한 새로운 이용국이 빠르게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일찍부터 대두되어 왔다.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적인 보호방법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여러 기구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호관점에 따라 살펴보면, 건강의 관점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문화 및 지식재산권 관점에서는 유네스코(UNESCO), 환경의 관점에서는 국제환경회의(UNEP) 및 생물다양성협약(CBD), 지식재산권 관점에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무역·개발의 관점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그 외 국제개발회의(UNCTAD), UN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14]

본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국제적 논의를 되짚어보면서, 그 안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분석하여 보고 각 논의별 주요 함의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나고야의정서

1) 생물다양성협약(CBD)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15]을 채택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을 포함한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국제 규범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목적 달성의 수

11) "KTKP 소개"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www.koreantk.com/ktkp2014/about/introduction.page>
12) 정의민, 권오민, 박상영, 오준호. 『전통지식 보호 국제체제변화와 한의약지식 보호육성 대응전략연구』.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6:1-167.
13)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물질인 유전물질 중에서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물질을 말한다(CBD 제2조). 따라서 유전자원은 유전물질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Lyle Glowka, Francoise Burhenne-Guilmin, Hugh Synge. 『A Guide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orld Conservation Union. 1994:4.)
14) 김병일. 「전통지식의 특별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WIPO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2012;16(1):105.
15) 생물다양성협약(CBD)은 1992년 5월 22일 케냐의 나이로비(Nairobi)에서 채택되고, 동년 6월 5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50여 개국이

단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를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접근 및 이익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틀은 제8조(j),[16]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율은 이후 채택될 의정서에 위임하고 있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체제(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17] 2001년 10월 독일의 본(Bonn)에서 개최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작업반(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ccess and Benefit-Sharing)의 제1차 회의는 본지침초안(draft Bonn Guidelines)을 개발하였고, 2002년 4월 네덜란드의 헤이그(The Hague)에서 개최된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COP)[18]는 본지침(Bonn Guidelines)[19]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0년 10월 일본의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는 나고야의정서[20]를 채택하였고, 이는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2)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 중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에 의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결한 MAT(Mutually Agreed Terms,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유전자원이용국과 유전자원제공국이 공유를 해야 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하의 의정서로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관련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협약은 나고야의정서의 실질적인 제도 및 절차의 근간으로, 나고야의정서의 범위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조항의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나고야의정서의 분쟁해결 절차와 사무국 서비스도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고야의정서는 그동안 누구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던 자연물로서의 생물유전자원과 무형의 전통지식에 대하여, 특히 자원보유국(원산지국)의 입장에서 주권을 인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파생되는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바탕이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주체 명시 및 이행 보장, 분쟁해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 규정에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개별국가의 이행입법에 의해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자원이

서명하여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동 협약의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1995년 1월 1일 동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List of Partie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ttps://www.cbd.int/information/parties.shtml>). 한편 미국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서명을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동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생물다양성협약이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에서 지적재산권의 긍정적인 역할을 승인하지 않고, 기업의 사적 거래에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등을 사용하여 정부의 관여가 너무 심해질 수 있다는 미국 산업계의 저항을 반영한 결과이다(Sean D. Murphy.「Biotechnology and International Law」,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2001;42:71-72).

16) 국내 입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기술 및 관행을 존중·보존 및 유지하고, 이러한 지식·기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이들의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장려한다(CBD 제8조(j)).

17)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작업은 1998년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스라바(Bratislava)에서 개최된 제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개시되었다. 2000년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케냐의 나이로비(Nairobi)에서 개최된 제5차 당사국 총회는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 이해당사자의 참여, 이익공유 체계와 전통지식의 보존에 대한 지침과 기타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동 작업반은 2001년 10월 22일-26일까지 독일의 본에서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아홉 차례의 회의가 있었는데, 제9차 회의는 2010년 3월 22일-28일까지 콜롬비아의 칼리(Cali)에서, 그리고 2010년 7월 10일-16일까지 캐나다의 몬트리올(Montreal)에서 개최되었다(오윤석.「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향후 전망 분석」. 지식재산연구. 2011;6(3):212.).

18)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COP)는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약의 모든 체약국들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당사국총회는 1994년 11월 28일-12월 9일까지 바하마(Bahamas)의 낫소(Nassau)에서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2번 개최되었다.

19) 본지침의 공식 명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본지침(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이다.

20) 나고야의정서의 공식 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6.29.2.083

용국과 자원제공국 간의 이해가 엇갈려 잦은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간위원회(WIPO IGC)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UN의 특별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책 수립,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967년에 설립되었다. 기구의 임무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혁신과 찬조가 가능한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국제 지식재산 체계의 개발을 이끄는 것이다.

WIPO는 2000년 일반총회에서, 회원국의 유전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지식재산 이슈를 토론하고 국제적 협약을 이끌어내고자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이하 'WIPO IGC'라 함)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WIPO IGC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전통문화표현물의 지식재산적 요소에 대한 국제적 보호방안 논의를 위해서, 2001년부터 매년 3-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고, 2014년 7월까지 총 28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2015년에는 2014년 WIPO 총회에서 향후 개최 프로그램 개최를 결정하지 않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2016-2017 2년 동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각각을 주제로 하여 2회씩 총 6차례의 회의가 예정되었고,[21] 2016년 9월 현재 제31차 회의까지 진행되었다.

1) WIPO IGC 주요 논의사항

정부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의 경우에 현재의 지식재산권 제도로는 해당 유전자원 혹은 전통지식 보유자를 보호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하였다.[22] 이후 제28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및 "유전자원"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여기에서는 전통지식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관련 경험의 정리와 기본적인 원칙 협의, 실제적 수단에 대한 의견 토론 및 공동 방안의 채택 등 다양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특히 2016년 개최된 제29차~제31차의 회의에서는 보다 첨예하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제29차 회의(2016년 2월 15일-19일)[23][24]서 논의된 (1) 특허 출원 시에 이용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출처 공개를 해야 하는지 여부, 및 (2) 특허청(그리고 가능하면 출원인)이 잘못된 특허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원 및/또는 전통지식을 조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출처를 공개한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지, 공개가 필수적 또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심지어 공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한국 및 일본의 대표단들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공동제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회원국들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교환 및 보급,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을 적절히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개발도상국 및 토착집단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특히, 신성시되는 정보)가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사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제30차 회의(2016년 5월 30일-6월 3일)[25][26]에서는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여부에 대하여 집중 논의되었다. 필수적인 출처공개요건안과 출처공개요건이 없는 안이 제안되었으나, 다수의 논의는 특허출원을 위한 필수적인 출처공개요건안에 집중되었으며, 공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및 다른 방어적인 수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소수의 회원국들은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특허심사관에게 제공하여 심사에 반영하에 하는 것만으로도 유전자원의 보호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반면, 미국은

21) "2016-2017 WIPO IGC mandate" WIPO <http://www.wipo.int/export/sites/www/tk/en/igc/pdf/igc_mandate_1617.pdf>
22)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IPO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1/wipo_grtkf_ic_1_3.doc>
23) Debora Plehn-Dujowich (May 24, 2016) "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 PRISMATIC LAW GROUP <http://www.prismaticlaw.com/wipo-intergovernmental-committee-on-intellectual-property-and-genetic-resources-traditional-knowledge-and-folklore-igc/#_ftn3>
24) 자세한 보고서는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IPO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29/wipo_grtkf_ic_29_8.pdf> 참조.
25) "WIPO Committee Advances Working Document on Genetic Resources, Though Divisions Remain" ICTSD <http://www.ictsd.org/bridges-news/bridges/news/wipo-committee-advances-working-document-on-genetic-resources-though>
26) 자세한 사항은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WIPD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30/wipo_grtkf_ic_30_10.pdf> 참조.

공동 데이터베이스가 특허심사관 뿐 아니라 공공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전통지식이 공공 영역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의 토착집단 대표자들로부터의 우려를 촉발시켰다.

제31차 회의(2016년 9월 19일-23일)[27]의 논의는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접근법에 기초한 대상, 목적, 수혜자 및 보호범위에 집중되었다. 대상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협정문의 대상이 단순히 전통지식이라는 간결한 정의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미국은 전통지식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기준(eligible criteria for protection)"에 부합할 때만 보호 대상이 된다는 보다 제한적인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 목적에 대한 논의는 유전자원과 관련한 많은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전통지식의 사용 제어, 혁신 향상 및 공평한 접근 및 이익공유 등에 관한 복잡한 논의는 결국 전통지식 협정문의 목적이 전통지식의 남용, 오용 및 허가되지 않은 사용 등의 방지에 있는지에 관한 논의로 되돌아갔다. 가장 치열했던 논쟁은 누가 전통지식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토착집단은 정부는 전통지식을 생성할 수 없으므로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 그룹 및 토착집단이 거의 없는 그룹은 전통지식의 수혜자로서 정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아프리카, 중국, 인도 등은 전통지식의 수혜자로서 "국가"를 포함시키는 안에 찬성하였다.

WIPO IGC 회의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전통지식 보유국인 개발도상국 및 토착집단은 최대한 그들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하여 대상 및 목적을 광범위하고 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반면, 사용자가 될 선진국 그룹은 대상이 되는 전통지식을 축소하고 데이터베이스 공유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가지 쟁점으로 표출되고 있다.

3. 세계무역기구(WTO)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라 함)은 WTO 협정의 부속협정으로서 1994년 4월 15일 채택되어 199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이 기술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기여하고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상호이익이 되고 사회 및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하여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 협정 제7조).[28]

특히 TRIPs 협정 제5절은 특허에 관한 것으로 제27조는 특허대상에 관한 것이다. 제27조 제1항은 특허요건을, 동조 제2항 및 제3항은 불특정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TRIPs 제27조 제3항 (b)호는 미생물을 제외한 동물과 식물,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동물 또는 식물의 생산을 위한 방법을 불특허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식물신품종(plant variety)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생물,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인 동물 또는 식물의 생산 방법, 그리고 식물신품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TRIPs 협정 협상 당시 동식물에 대한 특허권 부여를 강력히 주장하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개발도상국, 회원국 내부 의견이 달랐던 EC(European Community) 등의 타협의 산물로 본 호가 탄생했지만, 이러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본 호에는 4년 후 재검토를 지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29][30]

동 조항의 검토를 위하여 1999년 WTO 산하 TRIPs 이

27) "As the Curtin Draws on TK: WIPO-IGC Session 31 Kicks the Can Further Down the Road" ABS Canada <http://www.abs-canada.org/news/as-the-curtin-draws-on-tk-wipo-igc-session-31-kicks-the-can-further-down-the-road/>

28) Article 7. Objectives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o the transfer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y, to the mutual advantage of producers and users of technological knowledge and in a manner conductive to social and economic welfare, and to a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Part I — General Provisions and Basic Principles" WTO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7-trips_03_e.htm>)

29) 특허청. 『WTO TRIPs협정 조문별 해설』. 대전: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2004:168.

30) Article 27 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Part II — Standards concerning the availability, scope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O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7-trips_04c_e.htm>)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6.29.2.083

사회(TRIPs Council)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 조항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지는데,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이 원래 유래된 공동체나 국가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히 제3자에 의한 이용이 특허출원의 대상인 경우에 초점을 두고 있다.[31] 즉, 특허대상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은 생명체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거나 한정하자는 입장인데 반하여 미국 등은 불특허대상을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32]

현재의 논의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TRIPs 협정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33]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에 사전통보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15조). 반면, TRIPs 협정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 특허의 경우에 전통지식의 이용자인 출원인에게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전통보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하여 개발도상국은 생물다양성협약을 반영한 형태의 TRIPs 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TRIPs 협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는 다시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 협정은 저촉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호보완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다"라는 미국, 일본의 입장과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 협정은 저촉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EU의 입장으로 구분된다.[34]

2008년 7월, TRIPs 이사회에서는 현재 특허출원시 발명의 기초가 된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TRIPs 관련 이슈에 관한 제안서(Draft Modalities for TRIPs Related-Issue)」[35]가 제출되었고,[36] 2011년 4월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간의 상호 존중성의 강화에 관한 결정 초안(Draft Decision to Enhance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37]이 제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4. 식량농업기구(FAO)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ITPGRFA)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라 함)는 모든 인구의 영양상태와 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촌 주민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UN 전문기구의 하나로 1945년 설립되었다.

1995년 FAO가 식물유전자원(plant genetic resources)에 대한 위원회를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이하 'CGFRA'라 함)로 명칭을 바꾼 이후, CGFRA는 식물유전자원을 탐색하고 보전하여 식물 육종과 과학적 목적을 위한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이하 'IUPGR'라 함)'을 채택하였다. 이후 1993년에 CBD 협약이 발효되면서, CBD와 IUPGR의 조화 문제가 제기되었고, 나아가 CBD에서 다루지 않는 식물유전자원의 현지외(Ex-Situ) 수집과 농부권(Farmer's right)의 현실화 작업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38] 이에 따라 FAO 헌장 제14조에 의거하여 IUPGR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의 형태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이하 'ITPGRFA'라 함)'으로 2001년에 변경 채택되었고, 2004년 6월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하였다.

ITPGRFA는 CBD와의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의 기초로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채택되었다.[39] ITPGRFA

31) 정명현.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102.
32) 특허청. 상게서. 2004:168-169.
33) "Background and the current situation" WTO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art27_3b_background_e.htm>
34) 김병일, 김경준, 채지영.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적재산」. 산업재산권. 2006;21:11.
35) "DRAFT MODALITIES FOR TRIPS-RELATED ISSUES" IATP <http://www.iatp.org/files/451_2_103294.pdf>
36) "Background and the current situation" WTO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art27_3b_background_e.htm>
37) "Draft decision to enhance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TO <http://docsonline.wto.org/imrd/directdoc.asp?DDFDocuments/t/tn/c/W59.doc>
38) 이호선, 이석영, 백형진, 정승기, 김정곤, 김연규.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국제쟁점 동향과 시사점」.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012;24(2):109.

는 CBD 협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당 조약 전문(Preamble)과 제1조(목적)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CBD 발효 전에 수집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포함 여부, 약품, 산림 또는 산업목적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배제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40] 결국 ITPGRFA는 식량농업유전자원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시하여 발효되었다.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은 그 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식량과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41]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이동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호 의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42] 따라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 확립은 매우 중요하였으며, 이에 ITPGRFA는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를 도입하였다. CBD와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자체제는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체제는 국가들끼리 상호 의존하고 있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계속적인 교환 노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는 양자적 접근과는 달라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43]

나고야의정서와 비교하여 특이한 점은 ITPGRFA에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농부의 기여를 인정하여 농부권이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ITPGRFA 제9조에서는 농부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 체약국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체약국들은 식물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호해야하며, 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동등하게 참여할 농부의 권한을 보장하고,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농부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보호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나고야의정서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이하 ILC)가 보유한 전통지식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5.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 전통의학 분야의 국제표준화

세계보건기구(WHO)는 1978년 알마아타(Almaty)에서 개최되었던 총회에서 일차 보건의료를 강조하면서 여기에 전통의학자들이 참여할 것을 권장하였고 이후 WHO에 전통의학 담당부서가 신설되었다.[44] 최근 WHO는 모든 사람은 수용가능하고, 접근가능하며, 적절한 비용의 사용가능한(acceptable, accessible, affordable and available)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통의학의 활용이 장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45]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의학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국가의 공식적인 의료체계 가운데 존속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EU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투자증가는 시장의 확장을 수반하여, 세계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2050년에는 5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46] 세계 시장에서 전통의학은 소멸된 의학에서 큰 성장잠재력을 가진 영역으로 다시 인정받고 있으며, 각 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통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치료효과 창출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통의학이 새롭게 각광받으면서 전통의학에서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무역의 자유화, 세계화를 주창한 WTO 체제가 출범하고 국가 간 인력과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급격히 진행된 세계시장의 단일화는 각 산업별로 기술장벽의 해소와 국제표준 채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47]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각 산업, 특히 새롭게 부각되는 신규 사업 영역에서 국제표준을 어느 국가(또는 어느 기업)가 얼마나 빨리, 그리

39) ITPGRFA 제1조(목적)
40) 이재곤.「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규제」. 국제법학회논총. 2007;52(2):355.
41) ITPGRFA 제2조(정의)
42) 오윤석.「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2008;53(2):201.
43) 오윤석. 상게논문. 2008:219.
44) 최승훈.「침술 등 전통의학의 표준화 추진하는 WHO」. 나라경제. 2007;(3):86-88.
45)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The Regional Strategy for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2011-2020)』. WHO Western Pacific Region PUBLICATION. 2012:11-13.
46) Ajazuddin, Shailendra Saraf.「Legal regulation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s in different countries」. Pharmacognosy Reviews. 2012;6(12):154.
47) WTO 체제에서의 무역기술장벽 협정(WTO/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 교역을 저해하는 기술규정 및 표준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마다 새로운 기술규정을 도입할 때,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그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6.29.2.083

고 얼마나 독점적으로 선점하느냐는 시장 장악을 위한 관건이 되었다. '표준'이 '기술경쟁력'을 결정짓는 상황이 된 것인데,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제표준을 선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없고, 오히려 국제표준을 선점한 국가나 기업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기술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게 된다.

사실 전통의학 분야는 국제표준과 가장 부합하지 않는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전통의학은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인구에 적용되던 지역적 한계성과 특수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가 전 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효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통의학 시술이 나타나 상업화됨에 따라 국제표준은 전통의학 영역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WHO와 ISO 등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통의학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Ⅲ.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정책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나고야의정서와 WIPO 등과 같은 국제적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형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들이 여럿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전통지식에 한하여 해당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해 왔다. 필요에 따라 법률 개정이나 법원의 해석을 통해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고, 종자산업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2014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의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현재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며, 점차 기존의 지식재산에 대한 적용범위의 확대나 특별법 제정등을 통하여 생물자원 및 한의약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방안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각각 한의약 전통지식의 보호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한계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적 논의와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여러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 제도를 개괄해보고자 한다.

1.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보호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보호에는 특허법에 의한 보호, 상표법에 의한 보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등이 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48] 특허의 보호대상은 '발명'인 바,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49] 특허는 일정한 기간 동안 상업적 용도를 위한 발명에 관한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타인의 행위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권리자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이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내용이 종래 알려진 지식·선행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종래 알려진 지식·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진보성). 즉, 단순한 발견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유전자원이나 이에 관한 전통지식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특허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재산권에 해당하는 바, 일정부문에서 공유를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에는 한계가 존재한다.[50]

특허법은 '발명'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심사기준의 개정을 통해 생명공학에 관한 발명을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확장하였고,[51] 2006년에는 식물발명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무성

48) 특허법 제1조 참조.
49) 특허법 제2조 제1호 참조.
50) 오윤석.「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및 국내적 논의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21. 2004;86:3-28.
51) 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실.『컴퓨터발명 관련 발명 심사기준』. 대전: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실. 2005:1-102. 특허청.『화학분야 산업부문별 심사기준집』. 대전:특허청. 2000. 특허청.『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 : 최근 심사쟁점 사항 및 다양한 사례를 반영』. 대전:특허청. 2010.

번식뿐만 아니라 유성번식에 의한 식물발명도 특허법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52]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53]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표'라 함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표장으로서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이용할 수 있다.[54] 권리자는 상표를 일정한 제품에 대해 다른 제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표를 보호하는 이유는 그것에 고도한 창작성이 개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표에 사업자의 명성과 품질이 담겨있어 이를 소비자가 신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전통의약 자체를 보호할 수는 없으나, 전통의약을 활용하여 제조되는 상품을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통의약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

상표 또한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재산권에 해당하는 바, 일정부문에서 공유를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에는 한계가 존재한다.[55] 한편,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표제도는 단체상표와 인증마크이다. 공동체의 식별성을 나타낼 수 있고, 일정한 품질 또는 일정한 규칙의 준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단체상표와 인증마크는 전통지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56] 저작권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자의 저작물을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문학과 예술적인 창작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통지식에 해당하는 전통의약에 관하여 예전부터 내려오는 의서는 보호기간의 만료로 보호받지는 못한다. 다만, 전통의약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결과를 서적 등으로 표현한 저작물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편집물에 구현된 편집 방법에 국한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특별법에 의한 보호

특별법에 의해 지적재산, 특히 특정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 특별법은 그러나 그 적용범위와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전통의약과의 관련성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

우선 식물의 새로운 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품종보호 요건(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57] 동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해 육성자에게 품종보호권을 부여하여 보호품종을 실시(종자의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등)할 권리를 독점하게 한다.

한편 1990년대 WTO TRIPs를 통해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던 신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지리적표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표법과는 별도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해 농수산물에 관한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고 있다. 동 법률들에 의해 보호되는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5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상품주체 혼동 야기행위, 영업주체 혼동 야

52) 구특허법 제31조 규정 삭제.
53) 상표법 제1조 참조.
54)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참조.
55) 오윤석. 상게논문. 2004:3-28.
56) 저작권법 제1조.
57) 종자산업법 제2조 제4호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2호 참조.
58)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8호.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6.29.2.083

기행위, 표지의 식별력 등 손상행위, 원산지 오인 야기행위, 상품출처 오인 야기행위, 상품 사칭이나 상품의 내용·품질 등의 오인 야기행위, 대리인 등의 무단 상표사용 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다. 개인비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전통의약 지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도 있다.

3.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 제도

관련하여 제도적 행정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조직적인 법률 및 행정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59] 여러 관련 부서가 개별목적에 맞는 법률과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0년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에 나타난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나고야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16년 6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2년 2월 1일 제정되어 2013년 2월 2일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외국인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생물자원 이익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 생태계위해 외래생물 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법 제7-8조)에서는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물주권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 관리 및 생물주권 강화를 위하여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규정(법 제10조)하고,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생물자원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법 제11-13조)하는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법 제19-20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로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16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 법률안은 유전자원 및 연관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용, 이와 관련된 이익 공유, 신고, 금지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전통지식을 관할하는 책임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기타 소관분야 중에 전통지식 소관 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다. 따라서 전통지식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전통의학 지식에 대한 책임기관으로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4.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

WIPO 결의에 따라 2003년부터 PCT 최소문헌의 비특허문헌에 전통지식문헌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 보호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 특허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의약 분야에 대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2007년 12월부터 '전통지식포탈(KTKP,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Portal)'이란 명칭으로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첫째, 국내·외에서 한국 전통지식과 관련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한국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전통지식 DB 제공을 통해 전통지식 관련분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학문·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며, 셋째, 전통지식 DB를 심사관이 선행기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지식관련 출원에 대한 심사품질을 향상[60]시키기 위함이다. 전통지식

59) 특허청. 『신지식재산의 동향분석 및 법적 보호방안 기초연구 - 전통지식 관련 국제적 분쟁양태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연구』. 대전:특허청, 서울: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12, 52.

데이터베이스는 한의학 분야의 고전문헌뿐만 아니라, 전통지식 관련 한국논문, 전통지식 관련 한국특허문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과거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전통지식을 집대성한 것이다.

또다른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화 사례로 전통의학정보포털(OASIS)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관하여 구축하고 있는 포털로, 주로 한의약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산위원회로부터 1999년도에 한의학술논문 자료를 이관 받은 것으로 시작하여, 2000년부터 한의학술정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구축된 정보의 종류에는 한의학술논문, 한의연구보고서, 한의약 통계, 한약처방 등이 있으며, 총 자료량은 3만여건이 넘는다.[61]

Ⅳ. 한의약 관련 보호방안

국내외적 추이 변화에 따라 한의약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으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적극적 보호방법(positive protection)과 방어적 또는 소극적 보호방법(defensive protection)이 제시되고 있다. 적극적 보호방법은 전통지식 보유자들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3자가 이용할 경우 권리의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의 보호를 말한다. 방어적 보호방법은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 내에서 전통지식이 남용 또는 부정 이용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보호방식을 말한다.[62]

WIPO 정부간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해서도 일부의 전통지식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통지식에 대한 충실한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다. 어떠한 체제를 선택하고 도입할 것인지는 각 국가의 자율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체제를 도입하더라도 각국은 전통지식의 남용 및 오용을 방지하고, 전통지식으로부터의 이익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WIPO 정부간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이기도 하며, 유사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WTO TRIPs 논의의 기본 바탕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한의약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고, 각 방안의 의미와 효용성, 한계점을 전통지식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소극적 보호

1)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전통지식의 소극적 또는 방어적 보호방안은 전통지식의 보유자 이외의 자가 전통지식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배제시킴으로써 전통지식 보유 공동체와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지식을 직접적인 보호대상으로 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시행하며, 제3자에 대한 권리 구제수단을 보장하는 적극적 보호방안과 구별된다. 소극적 보호수단은 전통지식을 기초로 하는 발명에 대하여 제3자에게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부여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무효로 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전통지식의 부정이용이나 남용을 방지하여 부실 특허 및 기타 지식재산권 부여를 배제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지식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목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목록화 또는 데이터베이스화된 전통지식은 특허심사 시에 선행기술로 사용되어,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선행기술(prior art)은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공개된 종래의 기술, 즉, 공지, 공용의 기술을 말한다. 특허출원인이 전통지식에 기초한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해당 전통지식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으면 선행기술로 인정되고, 출원된 발명은 이 선행기술에 의해 신규성이 결여되어 특허받을 수 없고, 특허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특허는 무효로 된다.

특허 심사과정에서 전통지식을 선행기술 자료로 활용하려면 심사관이 자료에 접근하여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전통지식을 유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출판 자료는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전통지식을 디지털 형태로 재구성하여

60) "KTKP 소개"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www.koreantk.com/ktkp2014/about/introduction.page>
61) "오아시스 소개" 전통의학정보포털 <http://oasis.kiom.re.kr/oasisInst/c_kiom01.jsp>
62) Graham Dutfield.『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Geneva:ICTSD and UNCTAD. 2003:34-40.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6.29.2.083

검색엔진에 연결시키거나, 특허심사 분류상의 일정한 체계에 편입시켜 유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검색이 가능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한편 특허성 판단의 자료로 사용되는 선행기술에는 특허문헌 및 비특허문헌(Non-patent literature)이 포함된다. 특허문헌은 특허기관에 의해 정리 및 보관되고, 정보교환 시스템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대부분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지식은 아직 학술지나 정기간행물과 같은 비특허문헌에 게재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비특허문헌은 보관 형태, 관리시스템, 자료의 질과 양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선행기술의 검색과 검증에 이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비특허문헌 상태의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헌의 목록과 전통지식을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고, 자료 검색과 검증을 위한 정보교환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WIPO에서는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지식에 관한 비특허문헌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온라인으로 전통지식의 소유권을 검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전통지식 관련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 목록을 회원국들로부터 수집하였다. 제출양식은 DB명, 인터넷 주소, DB의 주요 내용, DB의 편집 또는 발행인의 성명과 연락처, 사용 언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DB의 개략적 내용과 형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여 향후 선행기술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 접근이 용이한 전자도서관을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사례로서, 식품 및 농업에 관한 토착민 의료기술, 선조의 기술 및 전통지식에 관한 자료로 이루어진 베네수엘라의 바이오줄루아(Biozulua) 데이터베이스를 들 수 있다. 기술이나 지식의 소멸 또는 분실 위험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보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채취한 샘플의 위성위치시스템(GIS) 정보를 기록하고, 사진, 동영상, 보유자가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언제든지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63]

인도는 2001년부터 민간의료요법인 아유르베다(Ayurveda)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전통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아유르베다 전통지식 전자도서관(Ayurveda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KDL)은 인도의 고대 문서와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통의약 치료제 및 식물의 치유 정보를 수록한 약 3천4백만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인도는 외국 특허청과 전통지식 비공개협정을 체결하고, 체약국 특허청에 TKDL을 보급하여 전통지식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전통지식을 침해하는 특허등록을 방지해 왔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35,000개의 약재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WIPO 포털사이트에 링크된 약재 구조는 약 2,200개이다. 데이터의 구성은 전통지식자원의 명칭(약재의 명칭), 지식이 알려진 날짜, 전통지식자원분류코드, 국제특허분류코드, 내용 요약, 키워드, 유사어, 구체적 제법과 체계, 문헌목록과 발행 날짜(선행기술) 등으로 되어 있다.[64] 인도는 TKDL의 성공적 운영을 인정받아, 2011년 3월,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한 특허방지와 생물자원 약탈 방지 및 약초치료, 식물에 대한 민간지식 등을 보호하기 위해 WIPO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2001년 중국 전통의약(Traditional Chinese Medicine) 특허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다.[65] 이 시스템은 1985년 이후의 중국 전통의약 관련 특허자료를 70,000여 종 수록하고 있으며, 중국 전통의약 특허문헌 12,024종을 영문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 밖에 정보공유체계로서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전통지식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66] 이 포털은 전통지식 자체를 수록하거나 문서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통지식의 연구 조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한국 특허청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2005년-2007년 한의학분야의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2007년 12월 온라인사이트 '전통지식포탈'을 개설하여 전통지식 관련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전통지식포털의 자료는 WIPO 웹사이트에도 탑재되어 영어로 검색할 수 있다.[67]

전통지식의 문서화는 전통지식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고, 출처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

63) Merle Alexander, K Chamundeeswari, Alphonse Kambu, Manuel Ruiz, Brendan Tobin. 『The Role of Registers & Database i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okyo:United Nations University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2004:16.
64) Merle Alexander, K Chamundeeswari, Alphonse Kambu, Manuel Ruiz, Brendan Tobin. 상게서. 2004:17-18.
65) 中国知识产权网 <http://www.cnipr.com/>
66) "Traditional Knowledge Information Portal"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ttp://www.cbd.int/tk>

고 있다. 반면, 토착지역공동체가 전통지식을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전통지식이 문서화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어 공유에 속하게 되면, 더 이상 해당 공동체의 자산으로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68] 그러나, 인도의 TKDL의 경우, '기존 문헌에서 이미 공유되고 있는 전통지식을 디지털형식으로 문서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69] 인도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상기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다. 인도의 TKDL은 디지털화된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부정이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 사례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70]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우려는 특허 심사 과정의 출원공개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과도 유사하다. 특허가 출원된 후 심사가 계속 중인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발명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허심사의 지연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 발명을 조기에 공개하여 타인의 기술 상황을 파악하며, 동일 기술에 대한 중복연구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71] 출원공개될 경우 특허출원인의 발명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될 가능성이 증가된다. 따라서 특허법은 출원공개 사실을 알고도 출원발명을 실시하는 악의의 제3자에게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특허법 제65조). 출원공개 시점에 특허출원인이 특허권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 침해로 볼 수는 없지만, 발명 공개라고 하는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에 대하여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다.[72]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악의의 이용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공개로 인한 부정이용의 위험 부담으로부터 전통지식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출원심사 시 출원된 발명과 전통지식 사이의 관련 가능성은 매우 광범위하여 연관성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디지털화 및 문서화 과정에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나 우편번호와 같이 전통지식의 목록 내에 색인 시스템 및 관련된 개인과 공동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을 채택하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다.[73] 이와 관련하여 WIPO는 개별 국가의 전통지식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국제 특허 출원 과정에서 선행기술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분류 시스템으로 전통지식자원 분류체계(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 TKRC)를 개발하고 있다.[74]

2) 전통의약지식 출처공개 의무화

전통의약지식의 방어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행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시 전통의약 지식의 출처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전통지식의 수혜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용에 관한 사전통보승인 및 그들과의 이익공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는 WIPO 정부간위원회뿐 아니라 WTO TRIPs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주로 개발도상국의 제안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기존의 특허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또는 행정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제출된 전통지식의 출처를 검토하고, 출원된 특허의 요건을 심사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하는 일체의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번거롭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행정적 처리가 창의적 행위 및 제품 개발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국가에서만 출처공개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전통지식 보호에 있어 영향력과 실효성이 적다. 해당 국가의 관할권이 아닌 곳에서 많은 전통지식의 남용·오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기구에서 이러한 이슈

67) "The PATENTSCOPE database" WIPO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en/search.jsf> WIPO검색시스템을 통하여 28개 국가 및 기관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68) "Recogni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ithin the Patent System" WIPO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13/wipo_grtkf_ic_13_7.doc>; Chidi Oguamanam.『Documentation and Digit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hallenges and Prospects』Cambridge:Intersentia. 2009:370.

69) "Bio-piracy of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http://www.tkdl.res.in/tkdl/langdefault/common/Biopiracy.asp?GL =Eng>

70) "TKDL Outcomes against Bio-piracy"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http://www.tkdl.res.in/tkdl/langdefault/common/TKDLOutcome.asp?GL=Eng>

71) 윤선희.『특허법』. 파주:법문사. 2010:540.

72) 윤선희. 상게서. 2010:545. 정상조, 박준석.『지적재산권법』. 서울:홍문사. 2011:129.

73) Anil K.Gupta.「Conserving Biodiversity and Rewarding Associated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 Honey Bees Perspective」. World Trade Forum, Bern. 1999:14.

74) WIPO.『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 Geneva:WIPO. 2008:29.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6.29.2.083

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타 국가와의 공조체제를 가져가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몇 개의 국가는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를 법령으로써 의무화하고 있다.[75][76] 그러나 한편으로 법령으로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도입을 꺼리는 의견들도 존재한다.[77][78] 비록 우리나라 역시 전통지식의 출처공개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입장에 있지만, 출처를 공개한 국가들의 제도 역시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분적으로 도입 가능한 제도가 있을 때에는 국내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적극적 보호

1) 지식재산권 제도에 의한 보호

전통지식을 TRIPs 협정의 이행을 통한 자국 내 지식재산권 제도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TRIPs 협정은 지식재산권의 최소보호기준을 설정한 것이며, 회원국은 자국 내 사회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TRIPs 협정의 원칙과 목적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79] 따라서 회원국은 국내 지식재산권법의 정비를 통하여 전통지식의 부정이용과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80] 이하에서는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 의해 전통지식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지리적 표시를 통한 보호가 있다. 지리적 표시는 제품의 품질·특성과 토지, 자원, 환경 및 인적 요소간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프랑스의 원산지명칭 제도(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 AOC)는 지리적 표시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명칭이 부여된 상품의 가치는 환경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의 결합에서 비롯되며, 특히 전통적, 집단적으로 유지되는 생산 기술이라는 점에 가치가 있다. 이는 제품의 특성과 토착지역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토지, 지역, 자원, 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여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내에서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전통적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 자는, 공동체의 지리적 표시를 통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리적 표시는 전통을 보호하고 인간 문화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토지·환경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소유권자가 자유롭게 권리를 이전할 수 없고, 단체의 생산 관행이 지속되는 한 권리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단체적 전통 및 결정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착지역공동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도라고 본다.[81]

이렇게 부여된 지리적 표시는 보호를 부여한 국내에서 집행, 관리되며, 동시에 TRIPs 협정을 통하여 국제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보호수단도 확보하게 된다.[82] 지리적 표시 제도를 이용하여 토착민이 전통적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표지를 관리하는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면, 향후 원산지명칭에 관한 리스본협정이나 현재 추진 중인 지리적 표시의 국제등록제도와 같이 국제적 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83]

다음으로는 단체상표와 인증마크제도에 의한 보호가 있다. 상표는 제품에 부착되는 상징, 디자인, 단어 등을 통하여 생산자와의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식별성이 있을 때, 이러한 표장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다. TRIPs 협정에서는 상표에 관하여, "어떤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지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84]

---

75) Swiss Federal Council. Federal Act on Patents for Inventions(232.14) Article 49.a
76) Republic of South Africa. Patents Amendment Act, 2005. Section 30 Subsection(3B).
77) J.Janewa OseiTutu.「Traditional Knowledge: Is Perpetual Protection a Good Idea?」. IDEA. 2010;50(4):716.
78) "Proposal for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study by the WIPO secretariat on measures related to the avoidance of the erroneous grant of patents and compliance with exis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systems" WIPO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23/wipo_grtkf_ic_23_6.pdf>
79) 예를 들어 TRIPs협정 제22조 제1항의 지리적 표시 정의 규정에서는 "indications which identify a good"이라고 하여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상품과 관련된 것에 한하며, 서비스에 관련된 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본 조항이 각국의 국내법에서 서비스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스위스, 페루, 리히텐슈타인 등의 나라에서는 서비스도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특허청.『WTO TRIPs협정 조문별 해설』. 대전: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2004:125.)
80) Jean R Homere.「Intellectual Property, Trade and Development: A View from the United States」: Daniel Gervais.『Intellectual Property, Trade and Development: Strategies to Optimize Economic Development in a TRIPs-Plus Era』.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2007:349.
81) David R. Downes.「How Intellectual Property could be a Tool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Columbia J of Environmental L. 2000;25:268.
82) TRIPs협정 제24조 제9항.
83) David R. Downes. 상게논문. 2000:273.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표제도는 단체상표와 인증마크이다. 공동체의 식별성을 나타낼 수 있고, 일정한 품질 또는 일정한 규칙의 준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단체상표와 인증마크는 전통지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상표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구성원, 연합체 또는 기타 단체에 의해 사용되는 상표이다. 인증마크는 인증하는 자 또는 인증기관이 마크의 보유자가 되고, 직접 마크를 부착하거나 부착을 허가함으로써 일정한 규칙 준수 사실 또는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85] 토착지역공동체의 단체성 여부는 파리협약의 규정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제7조의 2에서는 "회원국은 비록 연합체들이 산업적 또는 상업적 기관 설립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원산지국의 법에 반대되지 않는 한, 기존의 연합체에 속하는 단체상표를 승인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6] 따라서 산업기관이나 조직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토착공동체라 하더라도 단체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특허제도에 의한 보호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특허 출원을 하는 자는 개발한 제품 또는 방법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적이며, 유용하다는 점을 명세서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87] 코스타리카, 헝가리,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은 전통적인 발명이 특허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자국의 특허법에 의해 전통기술에 관련된 발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88] 그러나 전통지식 보유자가 특허 제도를 이용하여 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통지식이 지닌 특성상 특허 요건에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특허출원 절차 및 비용의 과중한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통지식 자체를 직접적으로 특허발명으로 보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89]

전통지식을 특허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첫째, 신규성과 진보성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특허출원 시 발명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특허명세서는 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법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넷째, 특허 출원이나 유지를 위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90] 이러한 요건은 특허출원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지만, 전통지식의 주된 보유자인 토착민과 토착지역공동체에게 있어서 특허명세서의 기술적인 기재와 특허출원 및 유지비용 납부와 같은 절차상의 요건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허제도에 의하여 전통지식 자체를 보호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특허성 요건을 충족하는 전통지식이라면 원칙적으로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적인 장벽은 제도적 지원과 개선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이다.

전통지식이 TRIPs 협정상 특허 가능한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다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단, TRIPs 협정은 협정문 내에 이러한 특허요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회원국에게 스스로 정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협정상의 광범위한 문구를 유리하게 이용하여, 자국의 특허 제도를 TRIPs 협정의 요건에 맞게 개선하여, 전통적인 공예품, 레시피, 전통의약 관행, 치료기술 등을 특허 가능한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91]

마지막으로, 전통지식의 보호방안으로 미공개정보보호법을 활용할 수 있다. TRIPs 협정이 제39조에 불공정경쟁으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파리협약 제10조의 2를

84) TRIPs협정 제15조 제1항.

85) David R. Downes. 상게논문. 2000:276.

86)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7조의 2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The countries of the Union undertake to accept for filing and to protect collective marks belonging to associations the existence of which is not contrary to the law of the country of origin, even if such associations do not possess an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87) TRIPs협정 제27조 제1항.

88) 전통지식에 기초한 발명 특허의 예로서 카자흐스탄에서는 'kumis(말젖) 생산방법'(RK No.33), 'shubat(낙타젖) 생산방법'(RK No.6237) 등의 특허가 등록되었고, 러시아연방에서는 약재식물을 기초로 한 의약품의 특허가 등록되었다. 베트남은 '약물중독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약재식물의 전통적인 조제법'에 대하여 등록된 특허(VN1017)가 있다고 보고하였다.(Nuno Pires de Carvalho.「From the Shaman's Hut to the Patent Office: In Search of Effective Protection for Traditional Knowledg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Biodiversity and Biotechnology and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 2003:74-75.)

89) 육소영.「전통지식의 보호: 정의와 보호의 근거를 중심으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중국사회과학원 지재권센터.『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법적보호 : 2004년도 한·중 국제공동연구 보고서』. 서울: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2004:71-73.

90) Graham Dutfield.「TRIPs Related Aspects of Traditional Knowledge」.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1;33(2):245.

91) Jean R Homere. 상게서. 2007:349.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6.29.2.083

도입하여 미공개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므로,[92] 이에 의하여 민속의약과 치료기술 등, 토착민공동체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비밀로 유지되어 온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공개정보 보호란, 합법적으로 정보보유자의 관리 하에 있는 정보가 보유자의 동의 없이 공정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해 획득 또는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미공개정보로서의 보호대상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첫째, 당해 정보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업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비밀이어야 하고, 둘째, 비밀이라는 이유로 상업적 가치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정보가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유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93]

전통지식이 미공개정보로 보호되려면 실질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지식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착공동체는 비밀의 내용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질적, 잠재적인 상업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전통지식이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통지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공개정보는 타인이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규정 도입 당시에도 미공개정보가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라기보다는 제3자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 하에 합의된 것이었다.[94] 이를 전통지식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지식 보유자 이외의 자가 전통지식을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일단 전통지식이 공개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3자가 전통지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영업비밀침해를 구성하려면, 전통지식의 비밀성이 공동체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것이다. 특히 영업비밀로서 경제적 가치의 보호 실익은 침해행위의 중지 및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금지 및 예방청구권인데, 전통지식이 공개되어 비밀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95]

미공개정보보호는 공동체가 비밀로 유지하는 전통지식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지식의 문서화 및 정보화가 추진되어 전통지식의 자발적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비밀로 유지되는 전통지식은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미공개정보로서 보호되며,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취득 및 이용을 배제하고 그러한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 독자적 제도에 의한 보호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와 전통지식 보호에 적합한 제도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극이 존재한다. 일부 국가들은 국내적 사정에 맞추어 독자적인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고, 중국, 인도, 스위스, 에콰도르 등의 국가는 전통지식에 대한 정당한 접근과 이익배분 등에 관한 조항을 지식재산 제도 내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한편, 아프리카연합, 안데스 공동체와 같은 지역 기구들은 전통지식 보호제도에 관한 지역 모델법 또는 의정서 체결을 통한 운영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독자적 제도에는 전통지식 보유자에게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와, 전통지식에 대한 독점적 권한 행사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전통지식의 보유자는 개인 또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 자연인 또는 법인일 수도 있다.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대상상품 및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상업화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96] 그리고 전통지식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등록된 보유자로 하여금 사전 동의 없는 지식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부정경쟁방지제도에 의한 보호도 가능할 것이다.

공동체에 의한 관리제도 도입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라이센스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한다. 브라질의 경우와 같이 전통지식 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관리위원회 설치 등은 좋은 예이며, 전통지식 신탁회사를 설립하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통지식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전통지식의 보존은 그 동안 관행을 유지해 온 공동체에서 하되, 보호와 유지에 관한 제반 운영은 국가 또는 일정한 공동기관을 통해서 하는 이원화된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전통지식을 이용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품질의 표준화를

92) TRIPs협정 제39조 제1항.
93) TRIPs협정 제39조 제2항.
94) 특허청. 『WTO TRIPs협정 조문별 해설』. 대전: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2004:229.
95) 육소영. 상게서. 2004:74-75.
96) TRIPs협정 제28조의 제1항.

추진하여 단체인증마크를 부여하거나, 공인된 인증서를 발행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행정제도에 의한 자국내 전통의약의 보호 역시 가능하다. 중국의 입법례를 보면, 중약품목보호조례에서 전통의약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의약을 생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보호 허가를 받은 중약품목을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전통지식을 직접적으로 보호하지는 않지만, 생산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지식을 전통의약산업 보호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같이 행정제도에 의하여 전통지식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부정이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새로운 보호방안의 모색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지식재산권제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하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방안에 대한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보호체제로 언급되는 것으로는 공유 모델, 상용화 모델, 신탁모델, 소유권 모델 등이 제시되고 있다.[97]

공유(Pubic Domain) 모델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이 어느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이용이 허락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공유모델은 일정한 보완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통한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한방 등 전통 비법은 저작권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을 통해 전통지식을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통지식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소재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상용화(Commercial Use) 모델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자체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상업적으로 최초 개발한 자에게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보통법상의 부정사용의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일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행해진 투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전통지식 보유자가 상용화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으로 새로운 전통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데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선진국의 거대 기업의 상업적인 해적 행위나 독점 행위로부터 과연 전통지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냐는 부정적인 면도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나 민간단체 등이 중간에 개입하여 전통지식의 보유자들을 원조할 수 있다면 전통지식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약발전 지원 정책이나, 중국의 중의학이나 중약을 생산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 보호 정책 등이 본 모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신탁(Trust) 모델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그 보유자가 아니라 국가나 기타 일정한 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는 국가가 자신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입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모델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태국의 경우, 자국의 전통의약 중 국가처방과 일반처방을 규정하고, 국가처방에 대하여는 허락에 의한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본 모델은 특히 전통지식 보유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법제도 등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정부 등 든든한 후원자를 얻는다는 점에 장점이 있지만, 신탁 제도를 설치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 수탁 기관이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신탁자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소유권(Ownership) 모델은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하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지적재산권 법제에 가장 근접한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은 그 권리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의약과 같이 수천 년에 걸쳐 꾸준히 발전되어 온 공동체의 지식에 대하여 어느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통한 독점권에 의한 이익 추구가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자유로운 사용과 발전이라는 전통지식의 본질과는 크게 모순된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전통지식 중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의학 관련 전통지식

97) WIPO.「Intellectual property needs and expectations of traditional knowledge holders」. WIPO report on fact-finding mis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1988-1999), Geneva. 2001:201.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6.29.2.083

은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유래하였다. 또한 중국은 한약 자원 관련하여 30,000종이 넘는 자생고등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불과 4,500 여종의 자생고등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통의약 관련 지식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전통지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98]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나라는 전통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한 결과와 이익의 분배를 강조하는 자원보유국들의 입장과 달리,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전통지식을 활용한 특허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대개 자원이용국에 해당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다만, 지리적표시나 식물신품종 등과 같이 보호의 필요성을 공감하나 기존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신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 내에서 보호대상을 확대하거나 또는 독자적인 법률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신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응전략을 세우기 보다는 해당 분야별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 신지식재산 관련 정책이 분산되어 있거나 중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종합적인 신지식재산 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한편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10월 12일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었고, 2016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92개국이 서명을 하였으며, 89개국이 이미 비준절차를 마쳤다.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입법 과정 중에 있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동법안은 국회 동의를 거친 후 비준안을 유엔 사무국에 넘긴 뒤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이르면 2017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특히 그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단편적인 규정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다수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와 같은 산발적인 법령을 통합한 종합적인 법률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구체적인 이익 공유 모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선언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모호한 규정이 많아 법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생물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2016년 9월부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는 사실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 136개 중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업체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74개(54.4%)사에 달했는데, 이 중 중국의 생물자원을 주원산지로 이용하는 기업이 51.4%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국내 바이오 업계가 2014년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3892억원에서 최대 5096억원의 이익 공유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이 관련 법률체계를 완비한 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기존 관행대로 생물자원 관련 교역을 계속할 경우 심각한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다.[99]

이러한 갈등을 국제적 수준에서 논의하여 해결하고자 세계지식재산기구, 생물다양성 협약, 세계무역기구 등 다양한 국제적 기구에서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 합리적인 접근 및 이익 공유 방안들을 논의해 왔으며, 그 과정이 자연스럽고 투명해야하지만, 자원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복잡성은 누군가에 의한 남용, 오용, 또는 강압이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발생하기 마련이다.[100] 이렇기 때문에 자원이용과 관련된 국가는 자국의 보호방안을 위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은 기존 관련법을 적용하여 전통지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반면, 전통지식 자원이 풍부하지만 이를 개발하여 자원화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강력하게 자국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로써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그만큼 전통지식의 재산권행사와 권리보호에 대해서는 현재적인 것보다는 잠재적인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위기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98) 장일무 외 6인. 「전통의약관련 전통지식 현황조사 및 지재권 관련 연구조사」.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2002:12-13.
99) 법률신문 2016.11.07.자 기사 "나고야의정서 속속 발효…바이오업계 철저 대비 필요"
100) 조재신, 김병남. 상게논문. 2015:401.

있고, 현재까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관련 국제규범이 정립되어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합의를 위한 성의부족이 아니라 아직 합의를 가능하게 할 현실적인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의약지식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전통의약지식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부터가 난제이다. 특히 한의약 전통지식은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 공유하는 지식이고, 일부 토착지역공동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지식이더라도 그 지식이 다른 한의약 지식과 명확히 구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한의약 지식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한의약 지식에의 접근 단계에서부터 이익 공유에 이르는 단계까지 전 단계별로 필요한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전통지식 관련 산업은 1,000조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한의약지식은 이 가운데 핵심적인 정보 자원이다. 한의약 정보자원을 통해 국가와 국내기업에 경제적인 이득을 얼마나 가져다줄 수 있을지는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통의약지식을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지식재산권 혹은 특별법이나 행정제도로써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과 한의약 지식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여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있다. 국내 산업의 현황, 한의약 지식 자체의 특성,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산업과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전략 하에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 주도의 교육이나 법률 지원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상정, 조상혁, 안효질.「전통의약 분야의 법적·제도적 보장방안 연구」. 경희법학. 2001;36(2):107-156.
2. 장일무 외 6인.「전통의약관련 전통지식 현황조사 및 지재권 관련 연구조사」.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2002:12-13.
3. 안상우, 최환수, 김홍준.「우리 전통의약학 자료의 보호방안-WIPO의 전통지식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의 대응방안 모색-」.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41-54.
4. 고광국.「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전통의약지식의 현황, 국제논의 및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1-234.
5. 김은진.「한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방안-전통지식의 세계적 논의와 특허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1-92.
6. 고광국.「나고야의정서가 전통지식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책 : 한의약에 관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2013;19(1):305-352.
7. 조재신, 김병남.「전통지식·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한 보호 전략」. 법학논총. 2015;35(3):371-406.
8. 특허청.『전통의약관련 전통지식현황조사 및 지재권 관련연구』. 대전:특허청. 2002:1-482.
9. 한국한의학연구원.『전통의약기술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연구』.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2:1-252.
10. 한국한의학연구원.『전통지식 DB 구축사업 1차년도 산출물(전통지식 논문 국영문DB)』.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5:1-422.
11. 특허청.『전통의약관련 전통지식현황조사 및 지재권 관련연구』. 대전:특허청. 2002:1-482.
12. 오윤석.「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및 국내적 논의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21. 2004;86:3-28.
13. 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실.『컴퓨터발명 관련 발명심사기준』. 대전: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실. 2005:1-102.
14. 특허청.『화학분야 산업부문별 심사기준집』. 대전:특허청. 2000.
15. 특허청.『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 : 최근 심사쟁점 사항 및 다양한 사례를 반영』. 대전:특허청. 2010.
16. 특허청.『신지식재산의 동향분석 및 법적 보호방안 기초연구 - 전통지식 관련 국제적 분쟁양태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연구』. 대전:특허청, 서울: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12, 52.
17. 특허청.『지식재산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대전:특허청, 서울: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274.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6.29.2.083

18. 홍형득, 임홍탁, 조은설.「우리나라 ABS(나고야의정서) 대응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기술혁신학회지. 2013; 16(2):520.
19. 윤선희.『특허법』. 파주:법문사. 2010:540.
20. 정상조, 박준석.『지적재산권법』. 서울:홍문사. 2011:129.
22. 특허청.『WTO TRIPs협정 조문별 해설』. 대전: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2004:125, 229.
23. 육소영.「전통지식의 보호: 정의와 보호의 근거를 중심으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중국사회과학원 지재권센터.『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법적보호: 2004년도 한·중 국제공동연구 보고서』. 서울: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2004:71-75.
24. Sean D. Murphy.「Biotechnology and International Law」.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2001;42:71-72.
25. Graham Dutfield.『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Geneva:ICTSD and UNCTAD. 2003: 34-40.
26. Merle Alexander, K Chamundeeswari, Alphonse Kambu, Manuel Ruiz, Brendan Tobin.『The Role of Registers & Database i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okyo:United Nations University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2004:16-18.
27. Chidi Oguamanam.『Documentation and Digit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hallenges and Prospects』 Cambridge:Intersentia. 2009:370.
28. Anil K. Gupta.「Conserving Biodiversity and Rewarding Associated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 Honey Bees Perspective」. World Trade Forum, Bern. 1999:14.
29. WIPO.『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 Geneva:WIPO. 2008:29.
30. J. Janewa OseiTutu.「Traditional Knowledge: Is Perpetual Protection a Good Idea?」. IDEA. 2010;50(4):716.
31. Jean R Homere.「Intellectual Property, Trade and Development: A View from the United States」: Daniel Gervais.『Intellectual Property, Trade and Development: Strategies to Optimize Economic Development in a TRIPs-Plus Era』.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2007:349.
32. David R. Downes.「How Intellectual Property could be a Tool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Columbia J of Environmental L. 2000;25:268, 273, 276.
33. Nuno Pires de Carvalho.「From the Shaman's Hut to the Patent Office: In Search of Effective Protection for Traditional Knowledg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Biodiversity and Biotechnology and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 2003:74-75.
34. Graham Dutfield.「TRIPs Related Aspects of Traditional Knowledge」.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1;33(2):245.
35. WIPO.「Intellectual property needs and expectations of traditional knowledge holders」. WIPO report on fact-finding mis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1988-1999), Geneva. 2001:201.
36. "KTKP 소개"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www.koreantk.com/ktkp2014/about/introduction.page>
37. "List of Partie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ttps://www.cbd.int/information/parties.shtml>
38. "오아시스 소개" 전통의학정보포털 <http://oasis.kiom.re.kr/oasisInst/c_kiom01.jsp>
39. 中国知识产权网 <http://www.cnipr.com/>.
40. "Traditional Knowledge Information Portal"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ttp://www.cbd.int/tk>
41. "The PATENTSCOPE database" WIPO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en/search.jsf>
42. "Recogni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ithin the Patent System" WIPO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13/wipo_grtkf_ic_13_7.doc>
43. "Bio-piracy of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http://www.tkdl.res.in/tkdl/langdefault/common/Biopiracy.asp?GL=Eng>
44. "TKDL Outcomes against Bio-piracy"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http://www.tkdl.res.in/tkdl/langdefault/common/TKDLOutcome.asp?GL=Eng>
45. "Proposal for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study by the WIPO secretariat on measures related to the avoidance of the erroneous grant of patents and compliance with exis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systems" WIPO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23/wipo_grtkf_ic_23_6.pdf>
46.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The

Regional Strategy for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2011-2020)』. WHO Western Pacific Region PUBLICATION. 2012:11-13.

47. Ajazuddin, Shailendra Saraf. 「Legal regulation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s in different countries」. Pharmacognosy Reviews. 2012;6(12):154.
48. Kanchana Kariyawasam, Scott Guy.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Indigenous Knowledge: Implementing Initiatives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Deakin Law Review. 2007;12(2):107.
49. J. Janewa OseiTutu. 「Emerging Scholars Series: A Sui Generis Regime for Traditional Knowledge: The Cultural Divide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Marquett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2011;15(1):173.
50. Paul Kuruk. 「Goading a Reluctant Dinosaur: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as a Policy Response to the Misappropriation of Foreign Traditional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Pepperdine Law Review. 2007; 34(3):676.
51. "List of Partie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ttps://www.cbd.int/information/parties.shtml> (2016년 11월 16일).
52. "2016-2017 WIPO IGC mandate" WIPO <http://www.wipo.int/export/sites/www/tk/en/igc/pdf/igc_mandate_1617.pdf> (2016년 11월 16일).
53.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IPO <http://www.wipo.int/edocs/mdocs/ tk/en/wipo_grtkf_ic_1/wipo_grtkf_ic_1_3.doc>
54. Debora Plehn-Dujowich(May 24, 2016) "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IGC)" PRISMATIC LAW GROUP <http://www. prismaticlaw.com/wipo-intergovernmental-committee-on-intellectual-property-and-genetic-resources-traditional-knowledge-and-folklore-igc/#_ftn3>
55.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IPO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29/wipo_grtkf_ic_29_8.pdf>
56. "WIPO Committee Advances Working Document on Genetic Resources, Though Divisions Remain" ICTSD <http://www.ictsd.org/ bridges-news/bridges/news/wipo-committee-advances-working-document-on-genetic-resources-though>
57.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WIPD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30/wipo_grtkf_ic_30_10.pdf>
58. "As the Curtin Draws on TK: WIPO-IGC Session 31 Kicks the Can Further Down the Road" ABS Canada <http://www.abs-canada.org/news/as-the-curtin-draws-on-tk-wipo-igc-session-31-kicks-the-can-further-down-the-road/>
59. "Part I-General Provisions and Basic Principles" WTO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7-trips_03_e.htm>
60. "Part Ⅱ-Standards concerning the availability, scope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O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7-trips_04c_e.htm>
61. "Background and the current situation" WTO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art27_3b_background_e.htm>
62. "DRAFT MODALITIES FOR TRIPS-RELATED ISSUES" IATP <http://www.iatp.org/files/451_2_103294.pdf>
63. "Draft decision to enhance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TO <http://docsonline.wto.org/imrd/directdoc.asp?DDFDocuments/t/tn/c/W59.doc>
64. "Clarification on MoE&F notification of October 26, 2009 on biological resources notified as normaly traded commodities"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Government of India <http://www.moef.nic.in/downloads/public-information/br-notified.pdf>
65. "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AND RULES 2004"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http://wgbis.ces.iisc.ernet.in/biodiversity/sahyadri_enews/newsletter/issue27/pdfs/Biodiversity%20Act%20and%20Rules,%20basic%20note.pdf>

medicalhistory.jams.or.kr
http://dx.doi.org/10.15521/jkmh.2016.29.2.083

66. "Brazil's New Biodiversity Law" THE NATIONAL LAW REVIEW <http://www.natlawreview.com/article/brazil-s-new-biodiversity-law>
67. "Law No. 28216 on the Protection of Access to Peruvian Biological Diversity and Collectiv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WIPO <http://www.wipo.int/wipolex/en/details.jsp?id=5752>
68. "Law Amending, Incorporating and Regulating Miscellaneous Provi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de Promotion Agreement signed between Peru and United states (Law No. 29316 of January 13, 2009)" WIPO <http://www.wipo.int/wipolex/en/details.jsp?id=5754>
69. "生物多様性基本法" Biodiversity Center of Japan <https://www.biodic.go.jp/biodiversity/about/kihonhou/index.html>